

# 19세기 후반 서세동점 하의 상해(上海) 상황과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국제적 배경

---

최병욱

강원대학교 사학과 강사, 중국근현대사 전공

nachoice@hanmail.net

---

- I. 머리말
  - II. 1860년대 상해(上海) 조계지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
  - III. 1860년대 상해(上海)의 천주교 상황
  - IV. 오페르트 도굴 사건에 대한 중국의 대응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8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기초 및 중점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18-C17).

## I. 머리말

---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 청나라는 영국과 남경(南京)조약을 체결하여 상해를 비롯한 홍콩의 할양, 5개 항구의 개항과 더불어 영사재판권과 최혜국대우를 허용하였다. 또한 청나라는 1844년에 미국과 망하(望廈)조약, 프랑스와 황포(黃埔)조약을 연이어 체결하였다. 미국과 프랑스 역시 영사재판권과 최혜국대우를 획득했으며, 그 조약의 내용 또한 남경조약보다 풍부하고 세밀해졌다. 그런데 망하조약 제17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만약 (미국인의) 묘지가 중국인에 의해 훼손되거나 도굴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sup>1</sup> 또한 황포조약 제22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만약 중국인이 프랑스인의 교당·묘지를 훼손하거나 파괴한다면 지방관은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한다.”<sup>2</sup>

이러한 조약의 내용으로 보아 미국과 프랑스는 자국인의 묘지가 중국인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법적으로 사전에 예방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인들도 사자(死者)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하물며 유교사회였던 중국에서도 조상 묘소에 대한 훼손과 도굴은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다스렸다. 그런데, 조상 숭배가 더욱 엄격했던 조선에서 천인공노할 일이 1868년에 벌어졌다. 바로 조선의 실력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南延君)의 묘가 중국 상해에서 활동했던 독일 상인 오페르트(Ernst Oppert), 조선에서 선교하다 병인박해를 받아 중국 상해로 탈출했던 프랑스인 페롱(Stanislas Féron) 신부, 상해의 미국 영사관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하기도

---

1 王鐵崖, 『中外舊約章彙編』 1冊(北京: 三聯書店, 1957), 54쪽. “倘墳墓或被中國人毀掘, 中國地方官嚴拿照例治罪.” 괄호는 필자가 한 것임.

2 『中外舊約章彙編』 1冊, 62쪽. “倘有中國人將佛蘭西禮拜堂, 墳地觸犯毀壞, 地方官照例嚴拘重懲.”

했던 미국인 젠킨스(Frederick Jenkins) 등에 의해 도굴로 훼손되었던 것이다. 흔히 '오페르트 도굴 사건' 혹은 '덕산 굴총 사건'으로 알려진 남연군묘 도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은 오페르트를 비롯한 사건 당사자들이 원했던 조선의 개방과 천주교 박해 금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조선 정부가 위정척사를 강화하고 천주교를 더욱 박해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조상 숭배가 강한 유교사회는 차치하고서라도 서양인조차 자신들의 조상 무덤이 도굴 훼손되는 것은 큰 충격일 것이다. 오죽하면 사건의 주모자인 오페르트는 본국의 함부르크 법정에 기소되어 징역형을 판결 받았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또한 사건의 근원적 원인을 제공한 폐롱 신부는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본국으로 소환되었다가 인도 풍디셰리(Pondyerry)로 전임되었다. 미국인 젠킨스는 비록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불법파렴치한 피고인으로 상해의 미국 영사재판소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까지 하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병인양요의 과정에서 조선을 탈출한 폐롱 신부와 일부 조선 천주교 신자들의 병인년에 일어난 조선 정부의 천주교 박해에 대한 비뚤어진 복수였을까? 아니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신비의 나라 조선을 개국시켜 일확천금을 노렸던 오페르트와 젠킨스의 단발적인 욕망의 분출이었을까?

사건의 주모자인 오페르트는 프로이센의 함부르크 출신 유태인으로 이미 1850년 초에 중국 상해에 와서 상업 활동을 해 왔던 상인으로 개인적 통상 욕구가 넘쳤으며 철저한 장삿속과 상업 경영 계획으로 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자면, 그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전 1866년에 2차례에 걸쳐 조선을 항행하면서 대외개방을 요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정치제도, 산업과 지리, 풍습, 문화 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한 계획적인 시도로서 일관되게 통상개방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조선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개방론 중 하나였을 수도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조선 천주교회 내부의 자율적인 문화개방론과의 연계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부도덕한 시도일 수도 있다.<sup>3</sup>

오페르트가 남연군묘 도굴 사건 이후 저술한 저서<sup>4</sup>가 그가 주도한 이 사건을 잘 서술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조선을 개항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와 변명하기 위해 서술했다는 의견들이 다수의 연구지만,<sup>5</sup> 최근에 와서는 그의 저술 역시 당시 유럽인이 동양을 이해하는 보편적인 시각과 경험도 크게 작용했으며 그것이 정당하던 그르든 유럽의 역사와 시대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sup>6</sup>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천주교 인사가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조선 천주교에 큰 타격을 주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더욱 강화될뿐더러 천주교 박해도 심해졌다. 따라서 한국 천주교에서 바라본 이 사건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쩌면 조선에서 활동했으며 당시에 조선 대목구의 대목 대리(Provicaire)로 자임했던 페롱 신부였지만 그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는 것이 당시 프랑스 선교사 뿐만 아니라 현재 천주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 천주교 사전에서도 오페르트 도굴 사건에 대한 페롱 신부의 행위에 대해서 잘 서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7</sup>

---

3 원재연, 「오페르트의 덕산굴출사건과 내포 일대의 천주교 박해: 문화개방론과 관련하여」, 『백제문화』 29(2000).

4 오페르트 저, 신복룡·장우영 역주, 『금단의 나라 조선』(집문당, 2000).

5 박일근, 「젠킨스에 대한 駐上海美領事 裁判: 南延君 墓所盜掘 事件에 關하여」, 『부산대학교 논문집』11-1(1970); 노계현, 「오페르트의 南延君墳墓 盜掘蠻行과 韓國의 措置」, 『국제법학회논총』 27-1(1982). 현재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은 일확천금을 노린 오페르트 일당이 저지른 파렴치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6 노혜경, 「오페르트의 조선인식」, 『역사와 실학』 55(2014).

7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인 <GoodNews> 가톨릭 대사전의 '페롱 신부' 해설은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다만, 오페르트 관련

여하튼, 한국 천주교사에서 황사영 백서사건과 더불어 가장 큰 스캔들로 여겨지는 페롱 신부 가담의 오페르트 사건은 천주교 박해에 대한 복수와 일확천금의 욕망이 얽혀져 있는 개인적이고 단발적인 사건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거시적 시각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세동점 하의 동아시아 국제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의 출발지였던 상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해는 당시 다양한 서양인들의 집합소이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출발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아편전쟁 이후 설치된 조계지를 바탕으로 상해는 1860년대를 기점으로 동방의 런던, 혹은 동방의 파리로 불릴 만큼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서양 상인이나 선교사들의 활동무대였다. 오페르트는 이미 1850년대 초에 상해에 와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젠킨스 역시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상해에 와서 자랐기 때문에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또한 당시 상해는 강남 선교지로서 예수회의 선교 관할 지역이었지만, 많은 천주교 선교회가 상해에 교회 회계 등을 담당하는 사무소를 차려 선교회 상해 대표부로 활용했기에 서양 선교사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1860년대와 70년대에 프랑스 조계에는 프랑스 교민의 과반수 이상이 선교사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단순히 19세기 동양으로 달려온 서양의 모험가나 상인의 사적 욕망의 표출이나 천주교 박해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한 신부의 돌출적 행동이 아닌 19세기 서세동점

---

사건에서 페롱 신부를 다룰 뿐이다. 또한 『한국가톨릭대사전』에서는 ‘덕산 굴총 사건’ 해설에서 페롱 신부를 다루고 있지만(『한국가톨릭대사전』 3(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1688-1689쪽), ‘페롱 신부’ 해설에서는 ‘덕산 굴총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 배의 안내자로 동승했다는 내용만이 서술되어 있다(『한국가톨릭대사전』 11, 8874쪽). 반면, 최근에 오페르트 사건을 전후한 페롱 신부의 활동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는 연구로 조현범, 「덕산 사건과 프랑스 선교사 페롱」, 『정신문화연구』 40-3(2017)이 있다.

하의 다양한 정치·사회경제, 종교적 상황 속에서 벌어졌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 II장에서는 상해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을 조계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상해의 종교적 상황, 특히 천주교 상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V장에서는 오페르트 사건 이후 중국의 대응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 II. 1860년대 상해(上海) 조계지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

아편전쟁 이후 5개 항구의 개항으로 상해는 무역과 상업의 도시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동서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점차 변모하였다. 중국인들에게 상해는 서구 열강에 의해 침략당하는 울분의 도시였고, 도박과 아편, 매춘이 성행하는 환락의 공간이었으며, 서양의 낯선 문물과 지식이 있는 동경의 공간이기도 했다.<sup>8</sup> 또한 상해 조계지를 바탕으로 서양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던 1860년대에는 서양 열강의 체계적인 국가시스템의 통제가 정착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상인들이 개인적인 모험가로서 활약하던 곳이기도 했다.

1843년 10월에 체결한 남경조약의 후속 조약인 호문(虎門)조약 제7조에 따르면, 청 정부는 상해를 포함한 5개 항구 내에서 영국인의 거주를 허가하며, 중국의 지방관이 영국의 관리와 협의하여 영국인에게 가옥이나 택지의 임대를 허가하였다.<sup>9</sup> 이러한 호문조약은 영국이 중국에 조계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1843년 11월 상해 개항 후, 영국의 상해 영사와 상해

8 김경혜, 「上海에서의 王韜」, 『한중인문학연구』 28(2009), 311쪽.

9 『中外舊約彙編』 1冊, 35쪽.

지방관의 협의 끝에 1845년 11월에 <상해토지장정(上海土地章程)>이 공포되었다. <상해토지장정>은 상해 조계제도 형성과 발전의 법리적 기초로 간주되었다. 이후 상해 영사와 조계의 교민관리 기구는 여러 차례 <상해토지장정>을 수정 보충하여 자치 권력을 장정의 형식으로 고정화시키고 점차 상해 조계를 '나라 안의 또 다른 나라' 즉 국중지국(國中之國)이 되게 하였다. 물론 조계는 할양이 아니며 빌려주는 것이며 조계의 관리에 대해서는 청 정부도 일정한 권리가 있지만, 1854년에 영국·미국·프랑스 3국 영사는 <상해토지장정>을 대폭 수정하여 상해 조계지에서의 자체 행정관리 기구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sup>10</sup>

상해 조계의 발전은 초창기 중국인과 서양인이 따로 거주하는 화양분거(華洋分居)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는 화양잡거(華洋雜居)까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상해가 정식으로 개항된 이후부터 1853년까지 영국인들은 <상해토지장정>의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화양분거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조계지의 인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1853년 9월 상해 인근에서 소도회(小刀會)의 반란이 일어나 상해 현성이 점령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반란을 피해 2만 명이 넘는 많은 중국인들이 조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54년 영국 영사 알콕(Rutherford Alcock)을 중심으로 <상해토지장정>의 수정안이 마련되어 조계의 확장과 화양잡거의 승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장정을 통과시켰다. 많은 중국인들이 외국인거류지 내로 유입되자 개별 영사관이 자국민을 관리하던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거류지를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외국인과 중국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외국인의 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행정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부국(工部局)이 결정되었다. 공부

10 1854년에 공포된 상해토지장정은 <上海英法美租界租地章程>을 말한다. 民國『上海縣志』卷14(『中國地方志集成』, 『上海府縣志輯』 4) (上海書店, 1991), 6-7쪽 참조.

국의 설립과 함께 각 산하기관들이 설치되면서 외국인 거류지는 청 정부의 통치범위를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한 조계로 변모하게 되었다.<sup>11</sup>

1854년 토지장정이 체결된 후 상해의 영국·프랑스·미국 조계는 공동의 관리기관이 탄생했지만, 세 나라는 조계 관리를 여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태평천국 군대가 상해를 압박하는 과정 중에 상해의 미국 군사력이 미약하여 미국 측에서 영국 조계와 영국 해군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영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미국 조계를 영국 조계에 들어오도록 건의했다. 1862년 3월 6일, 미국의 시워드(William H. Seward) 국무장관은 주중 미국공사 버링게임(Anson Burlingame)에게 공동의 이익을 추진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와 ‘협조정책’을 유지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버링게임이 중국 재위기간 동안 유지된 중요한 대외정책이었다. 1862년 3월 31일, 영국은 미국 조계와 영국 조계의 합병을 결정하였다.<sup>12</sup> 이후 1863년 10월에 영국과 미국 조계는 정식으로 합병되었다. 처음에 영미조계로 불렸는데, 이것이 바로 상해 공공조계의 출발이었다. 한편으로 영국 조계와 미국 조계가 병합되면서 공부국 운영에 대한 영국인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자 역사적으로 영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프랑스는 공부국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인 행정기구인 공동국(公董局)을 설치하였다.

1862년에 태평천국 군대의 상해 공격으로 100만 명의 난민이 상해로 물밀 듯이 들어왔다. 상해 조계를 예로 들면 이때의 인구가 초기의 2천 배였고, 상해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했다. 최고점에 달했던 당시가 무려 3백만 명 정도였다.<sup>13</sup> 전쟁이 끝난 후에 큰 낙폭이 나타났다가

---

11 최낙민, 「‘동양의 런던’, 근대 해항도시 상해의 도시 이미지: 공공조계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38(2014), 299-301쪽.

12 姚遠, 「1860年後上海公共租界的誕生: 以〈美國對外關係文件集〉所見」, 『棗莊學院學報』, 2015年 第3期, 15-16쪽.

13 于醒民, 『上海, 1862年』(上海人民出版社, 1991), 13쪽.



1865년 이후 점차 안정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해 공부국 제1차 정식 인구통계를 보면, 중국인 90,587명, 외국인 2,297명, 합계 92,884명이었다. 프랑스 조계는 1865년에 중국인 55,465명, 외국인 460명, 합계 55,925명이었다. 두 조계 합계 모두 148,809명이었다. 조계지에 출현한 화양잡거의 국면이 나타나, 중국인이 거주하게 되어 외국 상인들은 재원이 확보되고, 조계 당국은 안정된 세수를 얻을 수 있었다.<sup>14</sup>

1843년 상해에 등록된 외국인은 26명이었고, 1844년에는 50명, 1846년에는 100명을 넘었고, 1850년에는 200명이 넘어섰다. 1860년에는 600명, 1865년에는 2,000명이 넘어섰다. 1850년 상해의 외국인 거류자는 모두 220명이었는데, 그 중 반 이상인 111명이 상인이었다. 다음으로 선교사 13명, 영사관 직원 7명, 신문기자, 의약사, 건축사, 목공, 제빵기술자 등 11명이었고, 가족과 아이가 68명이었다.<sup>15</sup> 1865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조계에 460명의 외국인 거류자들이 있었으며, 그 중 프랑스인이 259명, 64명의 미국인, 42명의 독일인, 19명의 영국인, 16명의 그리스인, 14명의 터키인, 14명의 포르투갈인, 12명의 네덜란드인, 10명의 오스트리아인, 7명의 이탈리아인, 3명의 벨기에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공공조계에 거주한 외국인 거류자는 5,129명이었는데, 그중 영국인 3,996명, 미국인 406명, 독일인 240명, 덴마크인 131명, 스페인 사람 118명, 프랑스인이 38명이었다.<sup>16</sup>

14 羅蘇文, 「晚清上海租界的公共娛樂區(1860-1872)」, 『檔案與史學』, 2002年 第1期, 30쪽.  
 15 熊月之等 選編, 『上海的外國人(1842-1949)』(上海古籍出版社, 2003), 1-3쪽. 1850년 8월에 창간된 영자신문 〈The North China Herald〉 창간호에 의하면 상인으로 구분된 111명은 양행 직원들과 모험심에 가득 찬 인사들로 이들 중 상당수는 매일 폭음과 투기적 상업 활동에 매달려 있다고 하였다(이화승, 「19세기 上海 會審公廨의 탄생과 中西 상업분쟁」, 『중국사연구』 44(2006), 167쪽).  
 16 吳圳義, 『清末上海租界社會』(臺北: 文史哲出版社, 1978), 2쪽. 吳圳義는 당시 프랑스 자료에 근거하여 공공조계의 인구를 밝혔는데, 일반적으로 공부국에서 조사한 인구조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한편, 당시 프랑스 조계에는 55,925명이 있었고, 그 중

태평천국운동으로 발생한 수많은 난민들은 강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해 조계지로 몰려들었으며, 새로운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과 노동력, 시장수요는 상해의 도시화와 근대화에 거대한 활력을 불어넣어 중국 근대 최초의 번영을 이룩하였다. 또한 서양 문화의 유입으로 신문 잡지와 출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상해는 근대 언론출판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서양 선교사를 중심으로 상해에서 <상해신보(上海新報)>가 창간되었는데, 이 신문은 1872년 종합신문 <신보(申報)>가 창간되어 파산할 때까지 1860년대 상해의 중국어 신문이었다. 1860년대 공공오락장소로는 아편 흡연관, 차관, 기원(妓院), 희원(戲園), 주점 등이었고, 당시 조계의 공공오락구의 경영은 꽤 성공적이었다. 공공 오락 장소는 주로 영국 조계지를 중심으로 번성하였다.<sup>17</sup>

한편으로 상해의 발전과 함께 도박과 창기 등 유흥업이 번성하였다. 특히 개항장을 중심으로 흥등가 문화가 발달했는데, 상해의 창기가 가장 번성하였다. 1864년 상해 주재 영국 영사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조계에는 중국인이 1만호 정도 되는데, 그중 668호가 기원(妓院)이었다.<sup>18</sup> 1869년 <상해신보> 기사에 따르면 양경빈(洋涇濱)에 이름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는 정식 기방이 수 천 호가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창기를 합치면 적어도 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하였다.<sup>19</sup> 물론 과거에도 기녀는 존재했지만 상해 등 도시에서의 기녀는 전통적인 기녀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 전통적 기녀는 주로 문인들을 상대하며 함께 악기를 타거나 서화를 즐기고, 시를 읊거나

---

프랑스인이 259명, 기타 외국인이 201명, 중국 거민이 55,465명이었다. 당시 프랑스 상인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가옥을 대거 건설하여 중국인에게 세를 주어 큰 이익을 내었다(劉惠吾 編著, 『上海近代史』上(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5), 156쪽).

17 羅蘇文(2002), 앞의 논문, 34쪽.

18 吳圳義(1978), 앞의 책, 138쪽.

19 오순방, 「상해와 중국근대소설의 변화」, 『중국학연구』 24(2003), 12-13쪽.

풍류를 즐겼지만, 근대 도시의 기녀는 상인이나 일반 평민을 주로 상대하여 술과 아편, 도박을 권하며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86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어 1890년대 본격적으로 형성된 조계의 유흥 공간들로 인해 상해는 '악마의 도시[惡都]'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될 정도였다.<sup>20</sup>

1864년 9월 공부국은 조계 내에 360여 명의 '질 나쁜 외국인들'이 있으며 이중 260명이 특정한 직업 없이 배회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빈손으로 중국에 와서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도박장, 매춘업소, 술집 등을 기웃거리거나 혹은 불량배, 해적, 심지어 거지가 되어 아편, 무기 밀매, 인신매매 등을 일삼으며 법을 무시하고 횡행하고 있었다.<sup>21</sup> 당시 공공조계 내에 도박장은 114개(영국조계 106, 미국조계 38)나 되었다.<sup>22</sup>

프랑스 조계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거나 더 심했다. 프랑스는 1860년대 초에 개별적으로 독자적인 공동국을 설립하여 조계 행정을 운영했는데, 당시 중국 상인들은 대부분 영국 조계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프랑스 조계에서는 상세(商稅)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동국에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편굴, 기원, 도박장을 운영하여 거액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당시 프랑스 조계 내에는 도박장이나 기원과 아편굴이 넘쳐나서 무뢰배 등이 모여서 유흥을 즐겨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제2차 아편전쟁 후 북경에서 퇴각한 프랑스 군대가 동가도(董家渡)와 서가회(徐家匯) 등지에 주둔하면서 프랑스 조계 내에서 재물을 탈취하거나 아편굴, 도박장, 기원을 전전하였고 어떤 병사는 퇴역 후에도 조계 내에 머물며 도박장이나 아편굴을 차려 이익을 챙기기도

20 김경혜(2009), 앞의 논문, 315쪽.

21 이화승(2006), 앞의 논문, 167쪽.

22 羅蘇文(2002), 앞의 논문, 35쪽.

하였다.<sup>23</sup>

1860년대만 해도 상해에 거주하는 외국인, 특히 서구 여성의 수는 매우 적었다. 때문에 무도회도 단조롭기 그지없었고, 별다른 사교활동도 없었다. 때문에 남성들은 교외로 나가 골프를 즐기기도 하고, 경마장을 찾아 도박을 즐기거나, 아편굴과 술집을 찾는 경우도 허다하였다.<sup>24</sup> 1860년 프랑스 공사 부르불롱(A. de Bourboulon)의 부인이 한탄하며 말하기를, “몇 년 전 이곳에서 생활하는 부녀의 수는 매우 적어 불과 8명에 불과하였다. 무도회와 초대회는 아무래도 아주 단조로웠다고 할 수 있다”<sup>25</sup>고 하였다. 당시에는 주로 가족들이 상해에 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 남성 혼자 단신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이러한 조계의 행정은 세력 있는 서양 상인에 의해 통제되었다. 그들은 항상 공부국 이사회에 피선되었다. 영국의 대상인 이화양행(怡和洋行, Jardine Matheson)은 공공 조계의 최대 양행으로 항상 공부국의 이사장에 피선되었다. 서양 상인의 정치활동 참여는 사실 그들의 경제 활동을 보다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이며, 미래 조계 건설의 멋진 청사진을 제시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이에 지출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돈을 버는 것이 상인의 주요 목적이라 그들이 조계 행정에 참여하는 것도 행정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더욱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영사와 매판, 그리고 중국 상인과 교류 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목적이 강했다.

그러나 서양 상인들은 여전히 상해에서 이방인일 뿐이었다. 심지어 상해에 오랫동안 거주한 후에도 여전히 본국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간절했다.

---

23 劉惠吾 編著(1985), 앞의 책, 153-156쪽.

24 최낙민(2010), 앞의 논문, 146-147쪽.

25 居伊·布羅索萊(2003), 「上海的法國人(1849-1949)」, 熊月之 等 選編, 앞의 책, 122쪽.

당시 외국 상인이 말하기를, 자신들의 관심은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며, 적어도 2-3년 안에 돈을 번 후에 멀리 떠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상해에 홍수가 나서 수몰되거나 대화재로 무너져도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할 정도로 상해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기회의 땅으로만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신속히 큰돈을 벌기를 바라는 관념은 상해가 ‘모험가의 낙원’이 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sup>26</sup> 특히 상해의 1860년대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개항 초기 중국에 온 서양 상인의 황금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서양 상인들은 거금을 벌었고, 그것으로 인해 상당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점차 물가는 올라가고 상해의 상업은 중국인이 점차 장악하자 서양인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양 상인들 역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sup>27</sup>

당시 서양 상인 중 영국인이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수위를 차지하였고 미국 상인과 독일 상인도 점차 대중무역에서 점유율이 높아졌지만 프랑스가 이 방면에서 매우 낙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프랑스 상인은 그 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sup>28</sup> 프랑스의 대중무역 비율은 다른 열강에 비한다면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반면 프랑스는 다른 방면에서 중국에서 그들의 명성과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그것은 바로 천주

26 吳圳義(1978), 앞의 책, 62쪽, 82-83쪽.

27 吳圳義(1978), 위의 책, 69쪽.

28 1873년 3월의 조사에 의하면, 상해에 거주하던 88명의 프랑스인 중 3명만이 상인이었다(吳圳義(1978), 앞의 책, 58쪽). 중국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수입비중(1871-1911)은 아래와 같다(출처: 嚴中平 等編, 『中國近代經濟史統計資料選輯』(北京: 科學出版社, 1955), 65쪽.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이며, 세 나라 이외에 기타 국가는 포함되지 않음.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홍콩 제외).

국가 \ 연도	1871-1873	1881-1883	1891-1893	1901-1903	1909-1911
프랑스	-	-	-	-	0.6
영국	34.7	23.8	20.4	15.9	16.5
미국	0.5	3.7	4.5	8.5	7.1

교 선교였고, 천주교 선교사의 대다수는 바로 프랑스 국적의 선교사였다. 상해의 천주교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 Ⅲ. 1860년대 상해(上海)의 천주교 상황

아편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가 된 상해는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도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곳이다. 김대건이 1845년 8월 17일 상해 포동(浦東) 지역에 있는 김가항(金家巷) 성당에서 페레올(Ferréol) 주교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았다. 또한 김대건 신부와 마카오 신학교에서 사제 교육을 받았던 최양업이 상해 예수회의 서가회(徐家匯) 신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마친 후, 1849년 4월 15일 남경 교구장 서리 마레스카(F.X. Maresca) 주교에게서 사제 서품을 받음으로써 조선인으로는 두 번째 사제가 되었다.

또한 남경조약이 체결되기 바로 전인 1842년 7월 상해에 도착한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 고틀랑(Claude Gotteland) 신부는 김대건이 마카오에서 조선으로 돌아와 활동하며 선교사들의 입국 경로를 조사하기 위해 배를 이끌고 1845년 6월 상해에 도착했을 때 김대건 일행을 찾아와 고해성사를 주고, 미사도 봉헌하였다.<sup>29</sup> 고틀랑 신부는 1847년에 서가회를 예수회 중심기지로 삼고 1848년 서가회에 신학원을 세웠는데, 이 곳 신학원에서 최양업 부제가 1년 정도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서품을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한국 천주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해의 천주교는 명말 대학사(大學士)이자 천주교도 서광계(徐光啓)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서광계의 고향인 서가회의 천주당은 명나라 말부터 시작된 곳이다. 강남 선교지

29 방상근 외, 『한국천주교회사』 3(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125-1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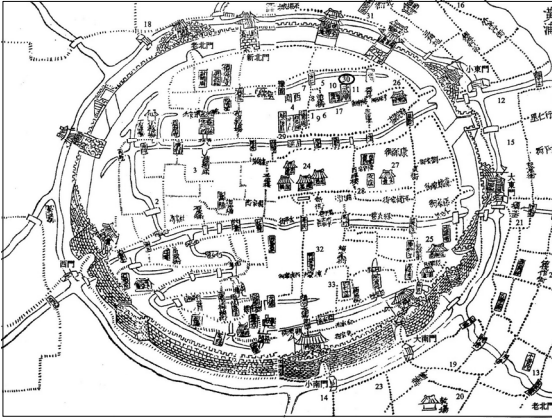


그림1-1814년 무렵의 상해 현성 30번(동그라미 표시)으로 표기된 부분이 관제묘(關帝廟)로 노천주당이 있던 곳이다.  
출처: 시바 요시노부 저, 임대희·신태갑 역, 『중국도시사』(서경문 화사, 2008), 203쪽.

의 강남은 상해를 포함한 강소(江蘇)와 안휘(安徽) 지역을 말한다. 교황청의 중국 교무 순시관의 기록에 의하면, 1663년 강남에는 모두 12곳의 큰 교당이 있었고 55,100여 명의 천주교 신자가 있었으며, 6명의 예수회 신부들이 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

다. 그 중 상해에는 두 곳의 교당과 66곳의 소당(小堂), 4만 명의 신자들이 있었다.<sup>30</sup> 옹정(雍正) 연간 청 정부의 금교(禁教) 정책으로 상해 천주교당은 전부 몰수되었고 상해 현성 내의 노천주당(老天主堂)도 몰수되어 관제묘(關帝廟)가 되었다.<sup>3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에 금교 시기를 이어져 오면서도 집안 대대로 천주교 신앙을 유지해 온 신자들이 많았으며, 대표적으로 중국 근현대 유명한 교육자이자, 예수회 신부도 했었던 마상백(馬相伯)과 그의 동생 마건충(馬建忠)의 집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경주교 겸 북경주교 서리였던 포르투갈 선교사 페레이라(Pires Pereira)가 사망하자, 교황청은 당시 호광(湖廣)에서

30 史式微(Servièrre), 天主教上海教區史料譯寫組 譯, 『江南傳教史』 1卷(上海譯文出版社, 1983), 8-9쪽.

31 노천주당은 1637년(승정 10)에 세워졌는데, 1723년(옹정 1)에 관제묘로 바꿨다가 1861년(함풍 11)에 예수회 선교사에게 반환되었다. 『民國上海縣志』 卷8, 9(『中國地方志集成』, 「上海府縣志輯」 4), 143쪽.

비밀스럽게 선교하고 있다가 북경교구에서 분리한 산동대목구장을 맡고 있었던 이탈리아 선교사 베지(Louis de Besi)를 남경주교로 임명하였다. 상해에 온 베지 주교는 포동의 김가항에 은닉하였고 이곳을 주교좌성당으로 사용하였다.<sup>32</sup> 1840년 교황청 포교성은 예수회와 협의하여 세 명의 신부를 중국에 파견하기로 하였고, 프랑스 파리의 예수회는 고틀랑, 에스테브(François Estève), 브르에르(Benjamin Brueyre) 등 3명의 선교사를 중국에 파견하였다. 사실상 이들 예수회 선교사의 파견은 재건된 예수회가 중국에서 다시 명·청 시대의 옛 명성을 찾는 임무를 띤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고틀랑 신부는 강남 선교지의 첫 예수회 회장에 임명되었다. 그들은 남경조약이 체결되기 한 달 전인 1842년 7월 상해에 도착했다.

아편전쟁을 계기로 프랑스는 통상조약 체결을 위해 전권대표 라그르네(Lagrené)를 파견하였다. 라그르네가 프랑스에서 출발할 때 예수회가 파견한 6명의 선교사들과 동행해 마카오에 왔었고,<sup>33</sup> 중국과의 조약 체결 전에 천주교 선교사들이 라그르네에게 중국 금교정책의 폐지를 요청한 상황이었다. 베지 주교 역시 천주교 선교 자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 라그르네가 청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할 것을 요청하였다.<sup>34</sup> 옹정제 이후 지속된 중국의 금교 조치를 해제시키기 위한 라그르네의 물밑 접촉이 황포조약의 협상과정 내내 진행되었다.<sup>35</sup> 결국 황포조약의 체결과는 별개로 1846년 2월 20일에 도광제(道光帝)는 천주교 금지의 해제를 선포했다.<sup>36</sup>

32 阮仁澤·高振農 主編, 『上海宗教史』(上海人民出版社, 1993), 628쪽; Servièr(1983), 앞의 책(1), 13-29쪽.

33 Servièr(1983), 위의 책(1), 63-65쪽.

34 Servièr(1983), 위의 책(1), 74쪽.

35 프랑스 대표 라그르네와 청나라 대표 기영(耆英)과의 천주교 이금 협상에 대해서는 최병욱, 「라그르네(Lagrené)와耆英의 天主教 認識 研究: 天主教 弛禁 協商(1844-1846)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0집(2008) 참조. 당시 프랑스측의 통역을 맡았던 칼리리(J. M. Callery) 신부는 김대건·최양업 신부의 교육을 맡았던 마카오 신학교의 교장이었다.

36 「著兩廣總督耆英等將康熙年間舊建天主堂勘明給還該處奉教之人事上諭」(道光 26年 正月 25



프랑스는 1844년 황포조약을 체결하여 다섯 항구에서 교당을 건립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으며, 특히 중국인이 프랑스의 교회나 묘지를 파괴했을 때는 지방관리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교당보호의 의무까지 보증 받았다. 청나라는 또 프랑스의 요청으로 천주교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하고, 각지의 관리들에게 천주교를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물론 중국 내지(內地)에서 선교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영사재판의 보호와 더불어 당시 천주교 선교사의 대부분이었던 프랑스 선교사들은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지인 사천(四川)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선교 범위를 넓혀 나갔다.

황포조약 체결 담당자인 프랑스 대표 라그르네가 조약 체결과는 별개로 중국의 천주교 선교 자유에 대한 황제의 명령을 요구한 것처럼 이후 프랑스는 계속해서 중국 천주교 선교에 대한 보호자로 나섰다. 이렇게 프랑스는 대중국 외교에서 선교 보호권을 강하게 밀고 나갔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천주교를 이용하여 정권을 공고히 하려는 프랑스의 국내 정책에서 그 내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다.<sup>37</sup> 1848년에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루이 나폴레옹은 권력 강화와 정치적 기반을 얻기 위해 천주교를 자기의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먼저 이탈리아 교황령에 혁명이 일어나자 오스트리아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로마 공화국을 타도하고 교황을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프랑스 천주교회를 그의 지지자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日), 中國第一歷史檔案館·福建師範大學歷史系 合編, 『清末教案』 第1冊(北京: 中華書局, 1996), 14쪽. 도광제의 상유에는 이전에 몰수한 천주교당이 묘우(廟宇)나 민거(民居)로 바뀌어 조사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래의 옛 건물이 아직 존재하는 것은 조사해 모두 해당 천주교 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37 王曉焰, 「19世紀上半葉法國對華政策的主要特征」, 『首都師範大學學報』, 1999年 第2期, 64쪽.

됐다. 또 국내에서는 반교권주의(反敎權主義)에 영향을 받아 국가가 독점했던 교육영역을 천주교 세력에게도 광범하게 열어주었다. 이러한 국가와 천주교회와의 관계는 이후 프랑스 제2제정이 탄생하면서 더욱 밀접한 단계로 나아갔다.<sup>38</sup> 나폴레옹 3세는 쿠데타에 성공한 이후 천주교회가 보내준 지지에 대한 보답으로 천주교 의식들을 보호해 주며, 추기경을 위시한 성직자들이 상원(上院)에 적을 둘 수 있게 하고, 여성수도회 다수를 공인해 주기도 하였다.

둘째, 중국에서 프랑스 선교세력을 확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 1848년 11월 10일에 상해 주재 프랑스영사 몽티니(Louis Charles de Montigny)는 천주교 보호가 프랑스 정부의 최선의 정책으로 중국 천주교도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들이 앞으로 프랑스 상업의 첫 번째 주고객이 될 것이라는 서신을 프랑스 전권대표 루앙(Rouen)에게 보냈다.<sup>39</sup> 몽티니는 또 얼마 후에 선교사 보호와 관련된 현안 문제를 보고하는 서신에서, 상업 방면에 관한 선교사들의 노력을 찬양해야 한다고 했다.<sup>40</sup> 조약체결을 위해 파견된 라그르네의 목적 역시 프랑스 정부 훈령에서 보듯 명확히 무역협정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황포조약 체결 후에도 프랑스의 대중무역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한 현상은 20세기 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로 보아 프랑스가 당시에 중국 천주교의 선교 보호권을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갔던 이유는 19세기 내내 중국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다.

셋째, 프랑스의 천주교 보호는 자신들의 전통이자 의무이며, 이를 통해 중국에서 정치적 위신과 명성을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

38 노명식,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까치, 1994), 257-269쪽.

39 Servière(1983), 앞의 책(1), 173쪽.

40 Servière(1983), 위의 책(1), 174쪽.

천주교 신앙 자유를 획득한 라그르네는 영국과 미국이 이루지 못한 정신문화  
 방면에서 프랑스 정부가 행동을 개시할 단계가 왔다고 기조(Guizot)에게  
 보고했다.<sup>41</sup> 천주교 신앙 자유의 소식을 들은 기조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당신의 사명은 국왕과 프랑스 정부를 영예롭게 했으며, 천주교 신자들은  
 이것을 프랑스의 영광스런 전통으로 여길 것이라는 비밀 문건을 라그르네  
 에게 보냈다.<sup>42</sup> 제정 시대이든 공화정 시대이던 간에 19세기 프랑스의 대중  
 국 선교정책은 정치적 위신과 명성을 얻기 위한 것으로 점철됐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프랑스의 선교정책은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인  
 천진조약(1858)과 북경조약(1860)에서 결과를 맺어 명실공히 프랑스는 중  
 국에서 천주교 선교의 보호자로 나서게 되었다.

확실히 종교적 측면에서 영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권리를 강하  
 게 주장하지 않았던 반면에 프랑스는 '조약이 우리에게 베푸는 확고부동한  
 권리들을 유지하는 것'에 집착했다. 제2제정 시기 동안 이 같은 미묘한  
 변화는 중요한 면에서 차이점을 만들어 갔다.<sup>43</sup> 영국과 프랑스의 이러한  
 상황은 개신교와 천주교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는데, 1867년 말에 총리선정  
 대신(總理船政大臣)인 심보정(沈葆楨)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무역과 이윤의 그물질은 아직까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종교는 서양인들에  
 의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다. 개신교는 종교적 행위의 순수함을  
 원칙으로 이끌고 있다. 그것은 여전히 불교와 도교와 같이 취급된다. 그러나  
 천주교는 찌끼와 오물에서 수행하고, 각종 사악한 짓을 행하며 도망하는

41 衛青心(Louis Wei Tsing-Sing) 著, 黃慶華 譯, 『法國對華傳教政策』上(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 316쪽.

42 Louis Wei Tsing-Sing(1991), 위의 책(下), 449쪽.

43 Paul A. Cohen, *China and Christianity, the Missionary Movement and the Growth of Chinese Antiforeignism, 1860-1870*(臺北: 虹橋書店, 1972), p. 201.

범죄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끊임없이 지방정부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설교의 선전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상으로 그것은 불길한 동기를 숨기고 있다. 신사와 백성들은 분개와 증오를 가지고 이겨내지만 결과는 폭력과 살인으로 나타난다. 프랑스는 이러한 사건과 항상 연관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유일하게 낳고 있다.<sup>44</sup>

이처럼 당시 프랑스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정치와 선교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편전쟁 이후 국제적 개항장으로 떠오른 상해도 정치와 선교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프랑스에서 라그르네와 함께 동행했던 프랑스 선교사 5명이 1844년 10월 15일 상해에 도착했고, 황포조약 체결 후인 1845년 10월 17일에 라그르네는 상해에 와서 여러 차례 선교사들을 만났다.<sup>45</sup> 1846년 5월과 8월에 또 일단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상해에 왔다. 이 해에는 천주교 금지를 해제한다는 도광제의 상유가 내려졌고, 이 상유에는 과거 몰수된 천주당을 반환하도록 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상해 지방당국에게 현성 내의 노천주당과 교회재산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 르메트르(Mathurin Lemaître) 신부는 상해의 영국 영사 알콕을 통해 상해 도대(道臺)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동가도, 양경빈, 석피농(石皮弄) 세 곳의 토지를 이미 관제묘로 바꾼 노천주당의 보상으로 배상 받았다.

이후에도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들이 잇따라 상해에 들어왔고, 1856년 1월에 교황청은 남경교구를 철폐하고 예수회에 위탁한 강남대목구를 건립하였다. 강남대목구가 성립된 후에 첫 대목구장으로는 1847년 10월 24일

---

44 *ibid.*, p. 200.

45 阮仁澤·高振農 主編(1993), 앞의 책, 631-632쪽.

상해에 온 예수회 선교사 보르니에(André-Pierre Borgniet)였다. 강남대목구의 건립과 1690년에 건립된 남경교구의 폐지는 중국에 대한 포르투갈의 선교 보호권의 종결을 의미하며, 이를 대신한 국가는 프랑스였다. 이러한 소위 '교황대리감목구'는 실제로 완전히 프랑스의 보호를 받는 것이며, 강남대목구는 프랑스 예수회의 중국에서의 독점적 선교 기반이 되었다.<sup>46</sup>

당시 중국의 천주교 선교사들은 프랑스인이 다수를 차지했다. 선교사를 보호하는 일은 중국에서 프랑스의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였다. 상해의 프랑스 선교사 인원수는 전체 프랑스 교민의 반수가 넘었다. 1860년대 상해에서의 프랑스 선교사의 인원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된 1874년에는 191명의 프랑스 교민 중에서 97명이 선교사였다. 1877년에는 2백 명의 교민 중에서 104명이 선교사였다.<sup>47</sup>

프랑스 예수회에 위임된 강남 선교지는 상해를 중심으로 주변 강남지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태평천국운동 기간에 태평군이 도달하는 곳마다 많은 공소(公所)들이 소멸되었고, 1857년, 1860년, 1861년과 1862년에 남경, 진강(鎮江), 상주(常州), 소주(蘇州)와 송강(松江)의 신자들이 잇따라 난을 피해 상해의 동가도, 양경빈과 서가회로 피신해 왔다. 따라서 이 세 곳의 신자수가 급격히 늘었다. 1862년 동가도 및 그 주변에서 1만 2천 명의 난민이 들어왔으며, 양경빈은 5천 명의 난민을 수용하였다. 서가회는 3천 명의 난민을 수용하였다.<sup>48</sup> 태평군이 진압된 후에 난민들 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간 자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떠나지 않았다. 이로부터 1900년 의화단(義和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30여 년간 강남 선교지 각지에 교안(教案)이 일어난 상황 아래에서 상해 지역은 프랑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 발전했

---

46 阮仁澤·高振農 主編(1993), 앞의 책, 633-634쪽.

47 吳圳義(1978), 앞의 책, 68쪽.

48 Servière(1983), 앞의 책(2), 71-72쪽.

다. 아울러 천진조약(1858)과 북경조약(1860) 그리고 1865년의 베르테미(Jules Berthémy) 협정의 체결로 선교사의 활동이 전체 강남으로 넓어졌다.<sup>49</sup>

상해 도대(道臺)가 동가도, 양경빈, 석피농 세 곳의 토지를 이용하여 이미 관제묘가 된 성내의 노천주당에 대한 배상으로 보상했는데, 14년 후 보르니에 신부는 다시 노천주당을 반환받고자 하였다. 1860년 3월 12일 제2차 아편전쟁 중 프랑스 원정군 사령관 몽토방(Montauban)이 상해에 주둔하며 북경 점령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몽토방은 천주교 신자였다. 그의 회고록에 의하면, 당시 프랑스 조계의 선교수도회 소당(小堂)에서 미사를 올렸다고 했다. 당시 예수회 상해 관구장인 보르니에는 몽토방이 자신을 방문했을 때 노천주당의 반환 요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몽토방이 북경을 점령하고 북경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1860년 12월 18일 상해에 온 후 보르니에는 몽토방에게 노천주당의 반환 요구를 상해 도대에게 하도록 요청했다. 결국 1861년 2월 19일, 상해 도대는 노천주당을 상해 주재 프랑스 영사 에단(Edan)에게 반환했다. 그리고 에단 영사는 노천주당을 보르니에에게 교부하였다.<sup>50</sup>

1860년대 들어 상해는 조계의 확장과 더불어 중국과 세계 각지의 상업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었다. 상해는 예수회의 선교 관할이긴 하지만 다른 선교회 신부들도 이미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천주교 선교 단체에서는 상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해에 자신들의 대표 사무소인 장방(帳房)을 세우고자 하였다. 조선대목구를 맡고 있던 파리외방전교회 역시 1855년에 홍콩과 마카오에서 외방전교회의 재무 관리를 하던 리부아(Libois, 李波) 신부의 요청이 있었지만 1864년에 가서야 대표 사무소(procure)를 세울 수 있었다. 그에 앞서 1856년 6월에 선교수도회는 프랑스 조계에 장방을

49 阮仁澤·高振農 主編(1993), 앞의 책, 635-636쪽.

50 阮仁澤·高振農 主編(1993), 위의 책, 651-652쪽.

설립하였다. 선교수도회 신부 역시 줄곧 양경빈에 거주하고 있었다. 포교성도 상해에 한 곳의 장방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예수회는 보르니에가 주교가 된 후에서야 프랑스 조계에 정식으로 장방을 설립했다.<sup>51</sup>

천주교 선교회 단체들은 상해에 장방을 설립하여 부동산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각자의 교구를 위한 재원을 증식했다.<sup>52</sup> 1850년대 이후 선교수도회, 파리외방전교회, 그리고 프란치스코회 등의 선교회에서는 상해에 장방을 설립했다. 수도회들이 설립한 장방은 듣기 좋은 중문 이름을 썼는데, 선교수도회는 '수선당(首善堂)', 파리외방전교회는 '삼덕당(三德堂)', 성모성심회는 '보애당(普愛堂)', 프란치스코회는 '방제당(方濟堂)', 아우구스티노회는 '망덕당(望德堂)', 말씀의 선교수도회는 '선도당(善導堂)'으로 칭했다.<sup>53</sup>

이들 선교회는 모두 부동산을 경영하였다. 선교회 업무에 따라 몇몇 장방은 상해에서의 거주지도 점차 변화되었다. 예를 들어 삼덕당은 1864년에 정식으로 16포(十六鋪)에 설립했다가<sup>54</sup> 1891년에 프랑스 조계의 영사관 맞은편으로 옮겼다. 이후에 태원로(太原路)와 분양로(汾陽路)로 옮겼다. 각 장방의 책임자는 총장방(總帳房)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프랑스 조계 시대에 수선당과 삼덕당의 총장방은 프랑스 조계 공동국 이사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경제적 수완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당시 예수회 장방은 상해의 큰

51 Servière(1983), 앞의 책(1), 345-346쪽.

52 보통 장방이라고 함은 오로지 경제 활동을 전담하는 기구는 아니었고, 선교단체의 하나의 대표 사무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Servière(1983), 위의 책(1), 14쪽.

53 각 수도회의 장방은 각기 자기의 중국식 당명이 있었는데 반해, 예수회는 여전히 '양경빈 천주당(洋涇濱 天主堂)'으로 칭했다. Servière(1983), 위의 책(1), 345쪽 역주.

54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후 조선인들과 페롱 신부가 숨어들어 지낸 곳이 바로 프랑스 조계 내에 있는 파리외방전교회의 장방이었다. 당시 중국의 사료에 나오는 소동문(小東門) 밖의 삼덕교당(三德教堂)은 파리외방전교회의 장방이었으며, 소동문 밖을 조금 나서면 프랑스 조계 내의 황포강의 프랑스 부두가 있는 곳으로 이곳에 조선인 신자들과 페롱 신부가 거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업주였으며, 수선당·삼덕당·방제당·보애당 등의 선교회 장방도 상해의 큰 부동산 업주였다. 그들의 부동산 임대 수입은 상당히 놀라울만했다.<sup>55</sup>

1860년대 예수회의 선교구였던 상해를 비롯한 강남 대목구장은 네 명의 신부가 이어서 맡았다. 교황청은 1859년 5월 24일 보르니에 신부를 강남 대목구장으로 임명하였고, 그는 같은 해 10월 2일에 동가도에서 주교 축성을 받았다. 1862년 7월 31일, 보르니에 신부가 사망한 후 르메트르 신부가 1863년 5월 15일 사망할 때까지 대목구장 서리를 맡았으며, 이후 고네(Joseph Gonnet) 신부가 대목구장 서리를 맡았다. 후에 랑기아(Adrien Languillat) 주교가 1864년 9월 9일, 직례(直隸)에서 강남으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받아 1865년 3월 22일 상해에 왔고, 1878년 11월 27일에 서가회에서 사망할 때까지 강남 대목구장을 맡았다.<sup>56</sup>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발발할 당시의 강남 대목구장은 예수회 소속의 랑기아 주교였다.

#### IV. 오페르트 도굴 사건에 대한 중국의 대응

오페르트는 1866년에 이미 두 차례 조선과의 무역 접촉을 위해 항행한 경험이 있지만, 세 번째 항행의 결과인 1868년 5월에 발생한 남연군묘 도굴 사건은 조선에 큰 충격에 빠트렸을 뿐만 아니라 상해 조계지의 서양인과 서양열강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조공국인 조선에서의 이 사건은 중국인들도 가담되어 있던 만큼 서양과 외교관계가 없었던 조선은

---

55 阮仁澤·高振農 主編(1993), 앞의 책, 743-745쪽. 당시 삼덕당의 총장방은 르모니에(Lomonnier, 1828-1899) 신부였다.

56 Servière(1983), 앞의 책(2), 350쪽.



대신하여 청나라까지 나서게 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사건이 발생하자 청조 예부(禮部)에 자문을 보내면서 고종 이희(李熙)의 이름으로 청 황제에게 상주문을 올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황에 대해 보고하였고, 아울러 남연군묘 도굴 사건에 가담한 조선 천주교 신자 7명에 대한 체포와 조선으로의 압송을 청조에 요청하였다.<sup>57</sup>

이에 청 조정은 비밀리에 소속 관청에 명령하여 조선 비민(匪民) 7명을 사로잡아 조선국왕에게 압송하라고 하였다. 아울러 조선 천주교 신자에 대한 체포 관련 내용을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해야 그 신자들이 달아나지 않게 되니, 신속히 처리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하달되었다.<sup>58</sup> 당시 양강총독(兩江總督) 증국번(曾國藩)은 청조의 명령에 따라 비밀리에 상해 해방청(海防廳), 상해현 회포국(會捕局) 및 합동 심리 위원 진복훈(陳福勳), 양무위원 호유연(胡裕燕) 등에게 조사하여 조선인 최선일(崔善一) 등을 체포하여 압송하라고 하였다. 이에 해방청과 회포국, 그리고 각 위원의 보고에 근거하여 증국번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비밀리에 조사해보니 상해 소동문(小東門) 밖에 외국 교당이 있는데, 이름이 삼덕(三德)이라고 합니다. 동치 5년에 어떤 서양인이 조선에서 상해로 왔는데, 조선인 9명을 데리고 와서 함께 그 교당에 거주했습니다. 이후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그 종적이 매우 비밀스럽습니다. 본년 봄에 듣건대, 그 교당 서양인이

57 「總署收禮部文」(同治 7年 6月 9日, 1868. 07. 28.),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清季中日韓關係史料』第2卷(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2), 101-106쪽. 당시 총리아문에서 예부의 공문을 접수한 날은 동치(同治) 7년 6월 9일, 즉 1868년 7월 28일로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뒤였다. 이 공문에는 조선국왕의 보고에 대해 전하는 예부의 상주문 1건, 서양선박이 내왕하여 소란을 피운 상황에 대한 조선국왕의 상주문 1건, 미국과 러시아 선박이 소란 피운 상황과 도주한 천주도당 7명을 체포해 달라는 조선국왕의 자문 1건이 부건으로 첨부되어 있다.

58 「總署收禮部文」(同治 7年 8月 20日, 1868. 10. 05.), 『清季中日韓關係史料』(2), 107-1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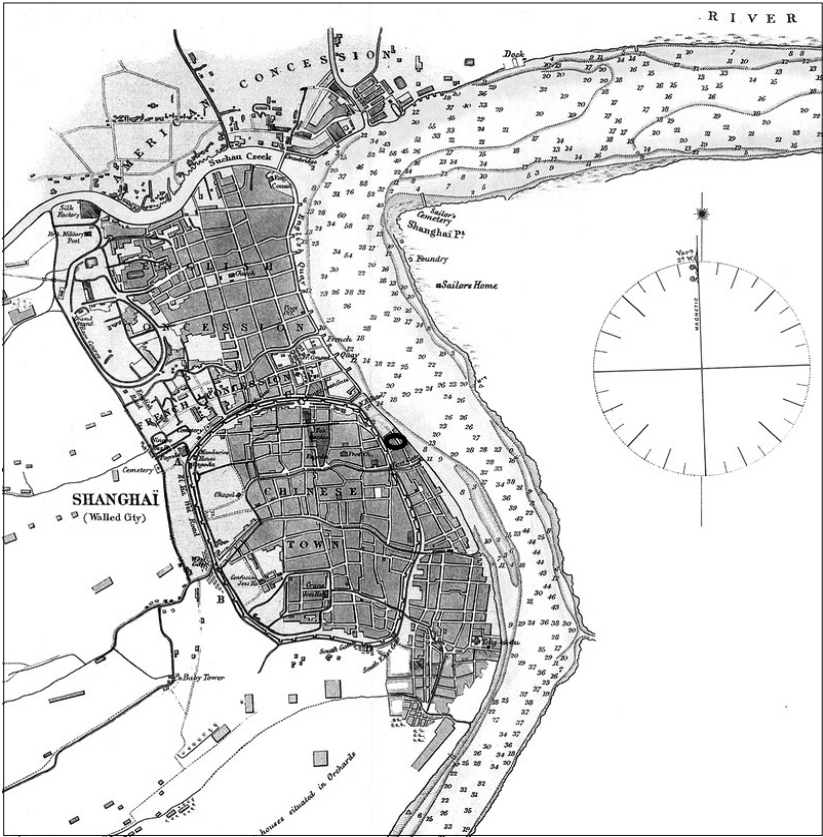


그림2-1862년의 상해 지도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삼덕 교당의 위치로 파악된다. CHINESE TOWN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상해 현성이다.

출처: United Kingdom Hydrographic Office; <http://www.virtualshanghai.net>

조선인 2명과 함께 배를 타고 조선으로 갔다가 상해로 돌아왔습니다. 윤4월에 이르러 그 서양인이 다시 조선인 6명과 함께 어떤 곳에 갔는지 조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해에 있을 때 중국식 복장을 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 수 없었습니다.”<sup>59</sup>

59 「總署收禮部文(附件1 兩江總督咨)」(同治 7年 8月 20日, 1868. 10. 05.), 『清季中日韓關係史料』(2), 108쪽.

이렇게 당시 청나라에서는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 상해 현성에 최선일 등에 대한 체포를 명령했으나 상해에서의 조선인의 거주지와 이동경로 정도만 겨우 파악했을 뿐이었다. 여기에서 거론된 ‘어떤 서양인’이라 함은 병인박해로 조선을 탈출한 페롱 신부 혹은 리텔(Félix Clair Ridet)이나 칼레(Alphonse Calais) 신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sup>60</sup> 삼덕 교당은 앞장에서 밝혔듯이 파리외방전교회의 상해 대표부를 이른다. 바로 이곳에 페롱 신부와 최선일을 비롯한 조선 천주교 신자가 은거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동문 밖 지역은 1861년 프랑스 조계가 1차로 확대될 때 편입되었는데, 황포강의 해안선까지 연결되었고, 1864년 이곳에 상해 최대의 부두가 건설된 곳이다.<sup>61</sup> 따라서 프랑스 조계지에 있던 삼덕 교당은 페롱 신부와 조선인이 선박을 통해 바로 숨어들 수 있는 최적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양강총독은 오페르트 사건에 연루된 미국인 젠킨스, 프랑스인 페롱 등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본년 5월에 조사해 본 바, 미국인 프레드릭 젠킨스는 벤자민 젠킨스의 아들로서 상해에 오래 거주했습니다. 가장 사건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프랑스인 페롱은 조선에서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본년 3-4월에 중국인과 서양인 무뢰배들을 끌어들여 프로이센 선박을 타고 상해에서 조선으로 가서 왕실 묘를 도굴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프랑스, 프로이센, 미국 등 각국 영사에게 조회를 보내어 그 사건을 조사케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동행했던 중국인의 이름을 요구하여 이들을 엄히 체포하여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뒤이어 프랑스 영사 브레니에(Brenier de Montmorand)가 조회를 보내어

60 병인박해 때 조선을 탈출한 조선인 신자 가운데 최선일, 심순여, 최인서 3명은 리텔 신부와 함께 탈출하여 상해에 머물며 칼레 신부가 조선인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조현범 외, 『한국천주교회사』 4(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18쪽.

61 劉惠吾 編著(1985), 앞의 책, 155쪽.

폐룡이 무고(誣告)하며, 선주와 선원이 모두 무죄라고 하였습니다. 프로이센 영사 테텐보른(A. Tettenborn)이 조회를 보내어 이 사건에 연루된 3명이 모두 소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선으로 갔던 배는 북독일의 깃발이 걸린 배였기 때문에 프로이센 선적의 배로 그 선주와 선원이 모두 이 사건에 연루된 3명의 모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총영사 시워드(George F. Seward)는 법정에서의 공동 심문 상황을 초록하여 붙여 왔습니다. 5월 하순의 신문지상에서 밝혀진 것과 내용이 서로 같습니다. 미국 영사는 젠킨스의 비위가 없다고 하며 책임을 면하려고 합니다. 다만 함부르크 영사 한센(Rudolph Heinsen)이 보낸 서신에 의하면, 그 나라 사람 오페르트를 조사해 보니, 조선에서 돌아온 후 바로 불러내 심문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진술 등의 증거를 함부르크 대의사당에 송부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 중국인 이름을 밝히지 못해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조선으로 갔을 때 조선인과 서로 선동하여 결탁했는지에 대한 유무 또한 그 단서를 알기 어렵습니다. …… 지금 조선인이 출몰하는 발자취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최선일 등이 틀림없습니다.”<sup>62</sup>

당시 청 정부는 서양 각국의 상해 영사에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 가담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프랑스 영사는 시종 폐룡의 무죄만을 주장하였고, 폐룡 신부측도 조선인 천주교 신자를 보호하면서 젠킨스의 영사재판에 계속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미국인 젠킨스는 상해 영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유죄 입증이 쉽지 않아 무죄로 판결났다. 다만 오페르트는 함부르크 시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후에 함부르크 대의사당에서 유죄로 입증되어 본국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62 「總署收禮部文(附件1 兩江總督咨)」(同治 7年 8月 20日, 1868. 10. 05.), 『清季中日韓關係史料』(2), 108-109쪽.

오페르트 사건에 가담한 중국인들 명단을 사건 가담자들이 밝히지 않아 이에 대한 조사도 사실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상해 지방당국은 조선인에 대한 행적에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예부의 자문을 받은 총리아문은 다시금 오페르트 도굴 사건에 관여된 조선인들의 체포를 독려했다.

“본 아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해 소동문(小東門) 밖에 외국 교당이 있는데, 이름이 삼덕(三德)이라 합니다. 서양 사람이 조선 사람을 데리고 그 교당에 거주하며 거리낌 없이 드나들고 있으며 사람들이 삼덕 교당의 조선 사람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올해 윤4월에 서양 선박을 타고 연태(煙臺)로 가서 서양인을 호신부로 삼아 태연자약하게 다니며 힘들지 않게 상해로 왔습니다. 예부가 총리아문에 공문을 보내기를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3국 공사에게 각서를 보내어 상해와 연태 영사에게 명령을 전하도록 하여 지방관을 회동하여 모두 체포할 것 등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조선 간민(奸民)이 서양인과 한 패가 되어 그 나라로 잠입하여 말썽을 일으켜 그 국왕이 중국에 요청해 대신 체포하여 압송해 줄 것을 호소하여, 응당 중국 지방관이 몰래 찾아가서 가차 없이 잡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갑자기 외국 사신이 각서를 보내거나 혹은 중간에서 비호를 하여 몰래 멀리 도망치게 하면 종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양강총독(兩江總督)이 귀 부(部)에 자문(咨文)으로 회답한 바에 의해 응당 귀 부서에서 양강총독과 산동순무(山東巡撫)에게 자문을 보내어 비밀리에 각 해당 지방관에게 명령하여 조사하여 엄중히 체포하여 잡아들이도록 명령하고 응당 귀 부가 조사하여 처리해 줄 것을 자문으로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sup>63</sup>

총리아문이 예부에 보낸 자문에 의하면, 조선인의 행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상해뿐만 아니라 산동(山東)의 연태에도 은거하고 있다는 소문에

63 「總署發禮部文」(同治 7年 9月 1日, 1868. 10. 16.), 『清季中日韓關係史料』(2), 110쪽.

따라 각국 공사에게 연태의 서양 영사에게도 조선인에 대한 체포 협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최선일 등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이 정말로 프랑스 조계지에 은신해 있었다면 체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프랑스 영사는 일찍부터 페롱 신부의 무죄와 선원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프랑스 조계지에서의 영사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영국과 미국 조계지의 영사에 비해 프랑스 조계지에서는 프랑스 영사의 권력이 가장 컸는데, 그 이유는 그가 프랑스 조계의 관리권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상해 프랑스 조계를 총영사의 권력 아래 두고자 하였다. 당시 프랑스 총영사는 조계지의 경찰을 통제하였다. 1868년 4월에 프랑스 조계에서 제정한 장정 제13조에 의하면 총영사는 프랑스 조계의 모든 관련된 질서와公安 유지의 일을 책임지며, 순포방(巡捕房)의 비용은 시정부가 부담하지만 지휘권은 전부 총영사의 수중에 있음을 명시하였다.<sup>64</sup> 또한 프랑스 정부는 중국 지방관청이 프랑스 조계에서 중국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했다. 1866년의 장정 제2조에 의거하면, 중국 지방관청이 사전에 프랑스 영사의 허가를 얻지 않을 시에는 조계 내에서 어떠한 중국인도 체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조사나 징세도 진행할 수 없다고 했으며, 프랑스 영사만이 이러한 일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였다.<sup>65</sup> 따라서 프랑스 영사의 승인 없이는 중국인조차 체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계지 내에 은신해 있던 조선인을 상해 지방당국이 체포할 수는 없었다.

사실상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발생할 당시인 1868년의 상해 프랑스 조계는 청 정부, 심지어 다른 외국 조계행정도 간섭하지 못할 정도로 프랑스 영사가 완전히 독자적인 행정을 운영하였다. 이미 1866년에 프랑스 영사가

---

64 吳圳義(1978), 앞의 책, 50쪽.

65 吳圳義(1978), 위의 책, 24쪽.

공동국 이사회를 장악했으며, 공동국 장정을 프랑스 외교부에서 제정하여 운영하였다. 당시 작성된 장정에 의하면 서양 각국은 프랑스 조계 내에서 프랑스 영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람을 체포할 수 없었다. 이에 각국 영사들이 항의하여 결국 1868년 4월에야 아주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프랑스 영사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다.<sup>66</sup> 한편으로 당시 파리의방 전교회의 상해 대표부였던 삼덕당의 총장방은 프랑스 조계 공동국 이사 중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던 조선인 천주교 신자를 체포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총리아문과 예부 사이에 오간 자문을 보면, 프랑스 영사는 페롱 신부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조선 천주교 신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상 청 정부도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페롱 신부측에서도 미국인 쟈킨스의 영사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오페르트와 쟈킨스의 비협조로 동행한 중국인 명단을 찾아낼 수 없었고, 총리아문이 영국과 프랑스, 미국 각국 공사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알려 그들로 하여금 각국 주재 영사에게 명령하여 중국 지방관과 함께 일당을 체포, 진상을 밝히도록 계획하였으나 프랑스 공사와 영사의 비협조로 더 이상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지 못하여 사실상 국제적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진상은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 청 정부 입장에서는 오페르트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조선이었고, 사건 당사자들은 영사재판권을 가진 외국인이었으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이상 조선을 대신하여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오페르트 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대응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

66 劉惠吾 編著(1985), 앞의 책, 156-157쪽.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868년 당시에는 중국 내에서 이미 청 정부가 직접적으로 처리해야하는 교안(教案)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1868년 11월에서 1869년 1월 사이에 사천(四川) 천둥(川東) 지역의 유양(酉陽)에서 일어난 교안에서는 교회측과 반교회측 사이의 대립에서 양측 모두 수백 명이 사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의 파병 문제가 거론되어 반교회 측의 처벌로 기울어졌고, 유양교안에 큰 책임이 있었던 중국인 신부 담보신(覃輔臣)은 당시 천둥지역 대목주장 데플레슈(Desflèches) 주교가 프랑스로 귀국할 때 동행했기 때문에 범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sup>67</sup>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발발한 당시의 유양교안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보더라도 프랑스 선교사는 치외법권을 앞세워 소속 천주교 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에 나섰고, 프랑스 공사는 중국 천주교 선교에 대한 보호자였기에 교안이 일어나면 군대 파견 등의 위협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유형은 이후 교안이 일어나면 발생하는 반복적인 형태였다. 결국 청 정부는 서양인이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국민조차 법적 책임을 물지 못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프랑스측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상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주요 공모자인 최선일 등의 조선인을 체포하여 조선으로 압송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다.

---

67 유양교안에 대해서는 최병욱, 「1860년대 重慶·酉陽의 反基督教運動」, 『강원사학』 17·18합집(2002) 참조.



## V. 맺음말

---

이 글은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황사영 백서사건과 더불어 가장 큰 스캔들로 여겨지는 페롱 신부 가담의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동아시아 국제적 상황 아래에서의 거시적 시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당시 서양 세력의 동아시아 진출의 거점이자 오페르트 사건의 출발지였던 상해 조계지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과 천주교 상황,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면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국제적 배경에 대해 고찰하였다.

1847년부터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에서 활동한 선교사는 18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3명은 주교였다. 특히 철종 재위기에 천주교 박해는 소강상태를 유지하였고, 조선교회는 상당한 교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병인박해 이전인 1865년에는 천주교 신자가 2만 3천 명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병인박해로 선교사 9명이 순교했으며, 3명은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탈출했고, 발전된 천주교 교세는 확연히 꺾이고 말았다. 이 상황에서 중국으로 탈출했던 신부들이 페롱, 칼레, 리텔 신부였다. 리텔 신부는 병인양요에서 프랑스 함대의 길잡이로 나섰다. 그리고 페롱 신부가 조선 천주교의 교세 회복으로 선택했던 것이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아편전쟁 이래 황포조약(1844)의 체결 과정 속에서 1846년 청 황제로 하여금 중국인의 천주교 신앙 금지를 해제시켰으며 천진조약(1858)과 북경조약(1860)의 체결로 내지 선교의 자유와 교당 건설의 허가, 그리고 청 정부로부터 중국의 천주교 선교에 대한 보호권자로 승인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1860년대 들어 프랑스 선교사들은 각 지역에서 옛 천주교당의 반환 작업에 나섰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돌적인 선교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 선교사와 천주교도를 보호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권을 챙기고자 하였다. 당시 프랑스는 조선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지만, 파리외방전교회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중국의 상해 등지를 거점으로 해서 조선에 대한 선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프랑스는 조선에서의 프랑스인 선교사들의 활동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병인박해로 탈출한 프랑스인의 보호와 더불어 박해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써 병인양요를 일으켰던 것이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상해는 아편전쟁 이후 설치된 조계지를 바탕으로 발전했는데, 특히 1860년대를 기점으로 동방의 런던, 혹은 동방의 파리로 불릴 만큼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서양 상인이나 선교사들의 활동무대였다. 1860년에서 1870년 초까지 들쭉날쭉하지만 상해에서의 외국인인 보통 2-3천 명 정도로 집계되는데, 그 중 선원 등 선박 관련 종사자와 아동 부녀자를 제외하고는 상인이 제일 많았다. 영미조계지에서의 공부국 이사장도 대상인들이 역임하는 경우가 많고 상인들이 영사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돈을 버는 것이 상인의 주요 목적이라 그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도 더욱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함이었다. 서양 상인들이 영사와 매판, 그리고 중국 상인과의 사이에서 맺은 사회적 관계 또한 이에 불과할 뿐이었다. 오페르트가 조선에 개항을 요구한 항행 의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큰돈을 벌기를 바라는 상인들의 관념은 상해가 '모험가의 낙원'이 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나 미국인 모험가 젠킨스 역시 모험가의 낙원인 상해에서 활동하며 조선의 개항을 빌미로 하여 일확천금을 꿈꾸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당시 상해는 강남 선교지로서 예수회의 선교 관할 지역이었지만, 많은 천주교 선교회가 상해에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사무소를 차려 선교회 상해 대표부로 활용했기에 선교사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1860년대와 1870년대에 프랑스 조계에는 프랑스 교민의 과반수 이상이 선교사였

다. 상해 파리외방전교회의 장방, 즉 상해 대표부에 머물렀던 페롱 신부는 조선에서의 천주교 선교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인 천주교 신자와 함께 남연군 묘 도굴 사건을 기획했다. 당시 중국에서의 선교 상황은 제2차 아편전쟁에 따른 천진·북경조약의 체결로 내지 선교의 자유와 합법적 교당 건설, 그리고 프랑스 정부의 선교 보호권으로 인해 합법적이면서도 저돌적인 선교를 전개하고 있었다. 페롱 신부 역시 조선에서 중국과 같은 선교 상황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병오박해부터 1866년 병인박해까지 조선 천주교의 발전은 크게 안정화된 시기였다. 그러나 한 순간에 병인박해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 상황에서 페롱 신부는 대원군을 압박하여 개항과 더불어 천주교 신앙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도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페롱 신부조차도 남연군묘 도굴을 통해 조선의 개항과 천주교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옳지 못한 방법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천인공노할 그의 행위도 어찌면 그것을 실행하고자 했던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조선 정부의 천주교 박해이겠지만, 페롱 신부가 은신해있으면서 자신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곳이 상해의 파리외방전교회였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군사적 지원도 아낌없이 해 주었던 프랑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단순히 19세기 동양으로 달려온 서양의 모험가나 상인의 사적 욕망의 표출이나 천주교 박해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한 신부의 돌출적 행동이 아닌 19세기 서세동점 하의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 종교적 상황 속에서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오페르트 도굴 사건에 대한 중국측의 대응 역시 자국 내의 유양교안의 처리처럼 서양인이 영사재판권의 특혜 아래 있는 이상 해당 서양 국가의

영사재판에만 맡겨야 되는 상황으로 폐롱 신부의 미국 영사재판의 꺾쇠와 조선인 천주교 신자를 보호하고 있는 이상 조선 정부의 조선인 체포 요청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폐롱 신부의 도굴 행위는 정당하지 못했지만 그가 도굴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선교 자유는 병인박해가 발생한지 20년 후인 1886년 조불수호조약의 체결로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조불조약 제9조의 내용이 청나라와 프랑스의 첫 조약인 황포조약의 내용과도 매우 비슷하다. 조불조약 제9조 2항에 “언어와 문자, 법률과 예술 등을 학습 또는 교회(敎誨)하고자 조선에 가는 프랑스인은 항상 우호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고, 프랑스에 가는 조선인도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sup>68</sup>라는 내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에서의 천주교 신앙의 자유가 선포된 것은 좀 더 세월이 흐른 뒤이긴 하지만 선교사들의 요청대로 프랑스측에서 ‘가르치다’라는 뜻의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삽입한 것은 조문의 해석상 천주교 포교권의 암묵적 승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청불 황포조약 제24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약 내용이 있다. “프랑스인은 5개 개항장에서 …… 사민(士民) 등에게 청해 중국어를 배울 수 있고, 작문·문예 등의 학습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 프랑스인은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중국인을 가르칠 수 있으며, 프랑스 서적을 발매하고 각종 중국 서적을 구입할 수 있다.”<sup>69</sup> 프랑스는 당시 황포조약에 선교의 자유를 넣지 못했다. 그러나 라그르네가 황포조약 24조에서 얻은

---

68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舊韓末條約彙纂』 下卷(東亞出版社, 1965), 110쪽. “凡有法國民人前往朝鮮國學習改教誨語言文字格致法律技藝者均得保護相助以照兩國敦篤友誼至朝鮮國人前往法國亦照此一律優待.”

69 『中外舊約章彙編』(1), 62쪽. “佛蘭西人在五口地方, …… 亦可以延請士民人等教習中國語音, 繕寫中國文字, 與各方土語, 又可以請人幫辦筆墨, 作文學, 文藝等功課. …… 佛蘭西人亦可以教習中國人願學本國及外國語者, 亦可以發賣佛蘭西書籍, 及採買中國各樣書籍.”

것은 프랑스인이 중국의 5개 개항장에서 문화 활동에 종사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즉 선교사는 문화 활동에 종사한다는 명목 아래 신학교를 창립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중국인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우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선교사들은 상해에 신학원을 설립하는 등 조약 체결 이후 활발한 선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의 상황 역시 이와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조불조약 체결 이후 조선의 프랑스 선교사들은 치외법권의 보호 속에서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양대인(洋大人)’이라 불리는 특권적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오페르트 지, 신복룡·장우영 역주, 『금단의 나라 조선』. 집문당, 2000.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舊韓末條約彙纂』 下卷. 東亞出版社, 1965.

故宮博物院明清檔案部·福建師範大學歷史系 合編, 『清季中外使領年表』. 北京: 中華書局, 1985.

民國『上海縣志』(『中國地方志集成』, 「上海府縣志輯」 4). 上海: 上海書店, 1991.

王鐵崖, 『中外舊約章彙編』 1冊. 北京: 三聯書店, 1957.

中國第一歷史檔案館·福建師範大學歷史系 合編, 『清末教案』 第1冊. 北京: 中華書局, 1996.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清季中日韓關係史料』 第2卷.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2.

United Kingdom Hydrographic Office; <http://www.virtualshanghai.net>.

### 2. 단행본

노명식,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 까치, 1994.

박일근, 『근대한미외교사』. 박우사, 1968.

\_\_\_\_\_, 『미국의 개국정책과 한미외교관계』. 일조각, 1982.

방상근 외, 『한국천주교회사』 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시바 요시노부, 임대희·신태갑 역, 『중국도시사』. 서경문화사, 2008.

조현범 외, 『한국천주교회사』 4. 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한국가톨릭 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3·1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劉惠吾 編著, 『上海近代史』上.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5.

史次徽(J. de la Servière), 天主教上海教區史料譯寫組 譯, 『江南傳教史』 1-2卷. 上海: 上海譯文出版社, 1983.

沈渭濱, 『困厄中的近代化』. 上海: 上海遠東出版社, 2001.

- 嚴中平 等編, 『中國近代經濟史統計資料選輯』. 北京: 科學出版社, 1955.
- 吳圳義, 『清末上海租界社會』. 臺北: 文史哲出版社, 1978.
- 阮仁澤·高振農 主編, 『上海宗教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3.
- 于醒民, 『上海, 1862年』.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1.
- 熊月之 等 選編, 『上海的外國人(1842-1949)』.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 衛青心(Louis Wei Tsing-Sing) 著, 黃慶華 譯, 『法國對華傳教政策』(上),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
- 張力·劉鑒唐, 『中國教案史』. 成都: 四川省社會科學院出版社, 1987.

Paul A. Cohen, *China and Christianity, the Missionary Movement and the Growth of Chinese Antiforeignism, 1860-1870*. 臺北: 虹橋書店, 1972.

### 3. 논문

- 김경혜, 「上海에서의 王韜」. 『한중인문학연구』 28, 2009, 309-331쪽.
- 노계현, 「오페르트의 南延君墳墓 盜掘變行과 韓國의 措置」. 『국제법학회논총』 27-1, 1982, 85-105쪽.
- 노혜경, 「오페르트의 조선인식」. 『역사와 실학』 55, 2014, 201-234쪽.
- 박일근, 「켄킨스에 대한 駐上海美領事 裁判: 南延君 墓所盜掘 事件에 關하여」. 『부산대학교 논문집』 11-1, 1970, 257-274쪽.
- 오순방, 「상해와 중국근대소설의 변화」. 『중국학연구』 24, 2003, 123-143쪽.
- 원재연, 「오페르트의 덕산굴총사건과 내포 일대의 천주교 박해: 문호개방론과 관련하여」. 『백제문화』 29, 2000, 171-187쪽.
- 이화승, 「19세기 上海 會審公廨의 탄생과 中西 상업분쟁」. 『중국사연구』 44, 2006, 149-190쪽.
- 조현범, 「덕산 사건과 프랑스 선교사 폐물」. 『정신문화연구』 40-3, 2017, 61-91쪽.
- 최낙민, 「동방의 파리, 근대 해항도시 상해의 도시이미지: 프랑스조계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75, 2010, 131-158쪽.
- \_\_\_\_\_, 「동양의 런던, 근대 해항도시 상해의 도시 이미지: 공공조계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38, 2014, 297-317쪽.
- 최병욱, 「1860년대 重慶·西陽의 反基督教運動」. 『강원사학』 17·18합집, 2002, 341-363쪽.

- \_\_\_\_\_, 「중국에서의 프랑스 '保教權'의 기원과 성립」. 『명청사연구』 22, 2004, 235-270쪽.
- \_\_\_\_\_, 「라그르네(Lagrené)와 耆英의 天主教 認識 研究: 天主教 弛禁 協商(1844-1846)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0, 2008, 327-357쪽.
- 羅蘇文, 「晚清上海租界的公共娛樂區(1860-1872)」. 『檔案與史學』, 2002年 第1期, 30-40쪽.
- 牟振宇, 「近代上海法租界城市空間的擴展」. 『城市規劃學刊』, 2008年 第2期, 111-118쪽.
- 梁偉峰, 「論上海租界與租界文化」. 『江西社會科學』, 2005年 第3期, 36-40쪽.
- 王曉焰, 「19世紀上半葉法國對華政策的主要特徵」. 『首都師範大學學報』, 1999年 第2期, 62-67쪽.
- 姚遠, 「1860年後上海公共租界的誕生: 以〈美國對外關係文件集〉所見」. 『棗莊學院學報』, 2015年 第3期, 15-18쪽.



## 국문초록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상해는 조계지를 바탕으로 발전했는데, 특히 1860년대를 기점으로 동방의 런던, 혹은 동방의 파리로 불릴 만큼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서양 상인이나 선교사들의 활동무대였다. 오페르트는 이미 1850년대 초에 상해에 와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젠킨스 역시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상해에 와서 자랐기 때문에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이들은 '모험가의 낙원'인 상해에서 조선의 개항을 빌미로 하여 일확천금을 꿈꾸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상해는 강남 선교지로서 예수회의 선교 관할 지역이었지만, 많은 천주교 선교회가 상해에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사무소를 차려 선교회 상해 대표부로 활용했기에 선교사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파리외방전교회 상해 대표부에 머물렀던 페롱 신부는 조선에서의 천주교 선교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인 천주교 신자와 함께 남연군묘 도굴 사건을 기획했던 것이다. 결국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단순히 19세기 동양으로 달려온 서양의 모험가나 상인의 사적 욕망의 표출이나 천주교 박해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한 신부의 돌출적 행동이 아닌 19세기 서세동점 하의 다양한 정치·사회·경제·종교적 상황 속에서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투고일 2019. 3. 20.

심사일 2019. 4. 11.

게재 확정일 2019. 5. 27.

주제어(keyword) 상해(Shanghai), 오페르트(Ernst Oppert), 남연군(Nam-Yeon Goon), 도굴 사건(tomb robbery), 페롱(Stanislas Féron), 젠킨스(Frederick Jenkins), 천주교(Catholicism), 파리외방전교회(The Society of Foreign Missions of Paris), 선교사(missionary)

## Abstracts

### The Situation of Shanghai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International Background of Oppert's Tomb Robbery Incident Choi, Byung-wook

By around the 1860s, Shanghai developed greatly and was nicknamed London of the East or Paris of the East, and there were many western merchants and missionaries active here. Oppert had arrived in Shanghai in the early 1850s where he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and Jenkins also grew up in Shanghai following his father, making him fluent in Chinese. Here in Shanghai, the 'paradise of adventurers', they dreamed of gaining huge riches under the pretense of opening up the ports of Joseon Dynasty. Furthermore, many Catholic missionary unions opened offices to be in charge of economic activities in Shanghai that were used as their missionary representatives in Shanghai, allowing opportunities for many Catholic missionaries. Father Féron, who resided at the Shanghai office of the Society of Foreign Missions of Paris, joined in planning to rob the tomb of Nam-Yeon Goon. This shows that the Oppert tomb robbery incident was conducted amidst the various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religious situations of the 19th century.